#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(안)

의안 번호 1327

제출일자: 2017.2. 27 . 제 출 자: 정관후 의위

#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.

### 2. 제정이유

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, 재원조달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- 라. 구청장은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- 마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(안 제8조)
- 바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두되 광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겸하도록 함 (안 제9조)
- 사.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건축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 의: 광진구청장과 협의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이 각 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"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 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,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방향)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,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.
- 2.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, 울타리,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.
- 3.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.
- 4.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, 공원, 휴게시설,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.
- 5.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·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다.

**제4조(구민의 권리)**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,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- **제5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」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  - 1.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
  - 2.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
  - 3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  - 4.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**제7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)**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 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적용범위)**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 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광진구 또는 광진구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
  - 2.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
  - 3.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
  - 4. 가스배관의 가시형 덮개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9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

- 1.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·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- 3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기능은 『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』 제7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겸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광진경찰서, 서울동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1조(홍보)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진구 보 또는 광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